

의안번호
제1402호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의안제출 : 2017. 11. 10.(금)
- 제출자 :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 : 2017. 11. 16.(목)
- 위원회 심사 : 2017. 11. 30.(목)

2. 근거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7조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3. 예산안 규모

가. 세출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	2018년도 예산요구액	2017년도 예산액(당초)	증감액	비율(%)
계	2,156,601	2,032,123	124,478	6.12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729,781	669,595	60,186	8.99
의정활동 역량강화	24,582	22,182	2,400	10.81
의정운영지원	150,370	145,878	4,492	3.08
의정활동 홍보	120,408	72,678	47,730	65.67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	54,800	47,400	7,400	15.61
인력운영비	987,361	987,323	38	0
기본경비	89,299	87,067	2,232	2.56

나. 세출예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액
	예산요구액	구성비	당초예산액	구성비	
합 계	2,156,601	100	2,032,123	100	124,478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729,781	33.84	669,595	32.95	60,186
의 회 비	729,781	33.84	669,595	32.95	60,186
의정활동 역량강화	24,582	1.14	22,182	1.09	2,400
일반운영비	19,582	0.91	17,182	0.84	2,400
일반보상금	5,000	0.23	5,000	0.25	0
의정운영 지원	150,370	6.98	145,878	7.18	4,492
인 건 비	27,112	1.26	27,780	1.37	△668
일반운영비	103,558	4.80	96,298	4.74	7,260
업무추진비	7,500	0.35	7,600	0.37	△100
배상금 등	200	0.01	200	0.01	0
자산취득비	12,000	0.56	14,000	0.69	△2,000
의정 활동 홍보	120,408	5.58	72,678	3.58	47,730
일반운영비	120,408	5.58	72,678	3.58	47,730
의정활동 보좌능력배양	54,800	2.54	47,400	2.33	7,400
일반운영비	23,800	1.10	20,400	1.00	3,400
여 비	31,000	1.44	27,000	1.33	4,000
인력운영비	987,361	45.78	987,323	48.58	38
인 건 비	953,401	44.21	954,143	46.95	△742
직무수행경비	33,960	1.57	33,180	1.63	780
기 본 경 비	89,299	4.14	87,067	4.29	2,232
일반운영비	25,404	1.18	23,772	1.17	1,632
여 비	40,800	1.89	39,600	1.95	1,200
업무추진비	8,095	0.37	8,695	0.43	△600
직무수행경비	15,000	0.70	15,000	0.74	0

다. 신규편성 및 주요 변경예산

- 국제우호협력 의회 교류추진 의원국외여비 1,000만원(p730)
- 의원 연수 위탁교육비 및 자체교육 강사료 1,540만원(p730)
- 제7대 의회 전반기 홍보 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p733)
-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정비 2,000만원(p734)
- 입법·법률고문 운영수당 증액 (p731)
 - 2017년 360만원 ⇒ 2018년도 600만원
- 구군의회의원 및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행사운영비 (p733)
 - 2017년 1,000만원 ⇒ 2018년도 2,000만원

4.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20억 3,200만원보다 6.1% 증액된
21억 5,660만원으로 편성함.
- 세출예산 구성은,
지방의회운영 10억 7,990만원(50.1%)
행정운영경비 10억 7,660만원(49.9%)으로 하였음.
-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 운영과 제7대 지방의회 개원에 따른 예산 등을 적정하게
반영 편성한 것으로 생각됨.
- 검토의견은,
의정활동 홍보운영비를 2017년도 대비 65%이상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지 방 자 치 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